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법적 근거 마련〉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78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2215978)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법적근거 마련(안 제11조)	2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221597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정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12.
3. 회 부 일 : 2026.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Ⅲ. 검토의견

1.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법률에 상향입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②④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1.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u> <u>2.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u> <u>3. 위·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탈취하는 등 위·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u>

현행	개정안
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㉕ -----제24항까지의----- ----- -----. 1. 2.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19.>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

동법 제11조제24항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²⁾

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7. 16.>

⑧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⑨ 삭제 <2018. 4. 17.>

⑩ 삭제 <2018. 4. 17.>

⑪ 삭제 <2018. 4. 17.>

⑫ 삭제 <2018. 4. 17.>

⑬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⑭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⑮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⑰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⑲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3. 21.>

⑳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㉑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㉒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㉓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8. 14.>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³⁾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⁴⁾

특히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 중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의무,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라 명의이전을 이유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의무 등(시행규칙 제21조 제26호·제28호·제29호)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법정 상한액인 500만원이 부과되는 중요 준수사항임.

개정안은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중요 준수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인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해당 의무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점에서 관련 의무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

법 령	비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②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u>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7.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8.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9. 위·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탈취하는 등 위·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개정안에 따른 법률 상향 사항 : 제26호, 제28호, 제29호 (안 제11조제2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27호 미포함

위반 시 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			※개정안에 따른 법률 상향 사항 : 제26호, 제28호, 제29호 → 과태료 500 만원(상한액)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어.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제21조 제26호	500	
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수탁 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 구하거나 받은 경우	제21조 제27호	500	
처.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수탁차주였 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 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제21조 제28호	500	
커. 위·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 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탈취하는 등 위· 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제21조 제29호	500	

다만, 시행규칙 중 “27.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은 개정안에 따른 타 의무과 같이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과태료 상한액인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위·수탁계약 체결 전 번호판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위·수탁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경우’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과태료 법정상한액 부과 대상인 중요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행규칙 내용 중 운송사가 위·수탁계약 전 계약 체결 명목으로 위·수탁차주에게 금전 요구·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없음. 위·수탁계약 체결 전·갱신·해지 등 소 단계에 걸쳐 운송사의 부당금 전 수취를 금지하는 제도 취지상 해당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의견

시행규칙 규정 내용을 법률에 재규정하는 것은 규정 중복에 해당하며, 행정력 낭비 초래가 우려됨. 또한 본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켜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 존재하며, 현장에서는 위·수탁차주의 보험료·관리비 미납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함.

3) 화물연대 의견

개정안에 동의하며, 본 개정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후속 개정할 필요가 있고, 불공정 위·수탁계약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조항과 함께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단속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0

참고

시행규칙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과태료 기준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1., 2012. 12. 6., 2013. 7. 11., 2014. 11. 28., 2015. 5. 26., 2016. 1. 7., 2016. 6. 30., 2017. 1. 6., 2018. 12. 31., 2019. 6. 28., 2020. 6. 17., 2020. 12. 29., 2022. 9. 30., 2024. 7. 10., 2024. 12. 18.>

1. 삭제 <2014. 9. 19.>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5.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6.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것

7.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할 것

8.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할 것

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개인화물”을 표시할 것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하고 추가로 “화물”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할 것

9.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1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1.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2. 화물자동차(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지 않을 것
13. 삭제 <2018. 12. 31.>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5. 삭제 <2014. 11. 28.>
16.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17. 삭제 <2020. 6. 17.>
18.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하지 말 것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가. 고장·사고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 2) 주·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 나. 고장·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

- 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23.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시간 연속운전 후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4.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지 말 것
26.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7.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8.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29. 위·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탈취하는 등 위·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30.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하지 않을 것
31. 화물자동차 운전자(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않을 것
3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신설 2024. 12. 18.>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제63조 관련)

위반 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21조제2호	50
나. 제21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3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다.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제21조제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라.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제21조제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마.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 받고 환급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바.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7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제21조제8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8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1조제9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21조제10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차.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21조제1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카. 화물자동차(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제21조제12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중 사자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 우	제21조제1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파.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 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 른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 차를 그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 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제21조제16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 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 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제18호	50
거.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한 경우	제21조제19호	50
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 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 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다만, 제21조제2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20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 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 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지 않고 운 송을 시작하거나,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구난 동의를 받지 않고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한 경우(제21조제21호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 자가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지 않거 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 시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2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머.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	제21조제23호(제41조의11에서	50

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버.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4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벤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1조제25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0
어.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수탁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제21조제26호	500
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수탁차주가 되려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제21조제27호	500
처.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위·수탁차주였던 자의 차량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제21조제28호	500
커. 위·수탁차주가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견인하거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탈취하는 등 위·수탁차주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제21조제29호	500
터.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중량 및 부피 등 화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21조제30호	50
퍼. 화물자동차 운전자(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한 경우	제21조제31호	50
허.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21조제32호	50